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222823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22282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8334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국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현정

변론종결 2022. 11. 24.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833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행 ‘인정되고,’를 ‘인정되고(2014. 7. 15.부터 2015. 7. 20.까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2013. 12. 차용금 원본에 일부 충당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2016. 8. 1.부터 2018. 1. 3.까지 지급된 금원도 일부는 원본에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본에 충당되는 차용금은 민법 제477조 제1, 3호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2013. 12. 차용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의 보증채무 범위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2019. 12. 11. 원고에게 별도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적담보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C이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그 공정증서 어디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적담보포기 내지 연대보증채무 면제에 관한 문구가 드러나지 않고, 달리 원고가 C으로부터 인적담보포기 등에 따른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이후에도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연락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 없음을 주장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도 피고는 C에 의하여 원본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던 점, ④ C과 피고는 동거하고 있는 등 서로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내용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6. 7. 차용금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무라고도 주장하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6. 7. C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2013. 12. 차용금의 원본 대부분은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2013. 12. 차용금과 달리 2016. 7. 차용금의 경우에만 이자를 정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점, ② C은 2013. 12. 차용금에 대하여 매달 이자 명목 금원을 지급하여 왔고, 2016. 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차용한 이후에도 그에 대하여 2013. 12. 차용금과 동일한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매달 지급하여 왔던 점, ③ 2016. 7. 차용금에 이율을 정하지 않았더라면 C으로서 2019. 12. 11. 원고에게 2013. 12. 차용금과 2016. 7. 차용금 원금을 합한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2016. 7. 차용금에도 2013. 12. 차용금과 동일한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윤영수, 판사 서동인